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8호

발행일: 2025. 9. 12. (금)

제428회 국회(임시회, 2025. 8. 6. ~ 2025. 8. 3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나. 주주가치 제고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8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8월 6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21일~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건, 23일~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14건 등 모두 18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8회 국회 제1차~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1)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8회 국회의 2025년 8월 21일~22일, 23일~25일,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등 18인
2	정무위원회(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6	교육위원회(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9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 의원 등 12인
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0인
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 등 10인
1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1인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4인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1인
1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등 10인
17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 의원 등 11인
18	환경노동위원회(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주주
가치 제고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개요

그동안 파업이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
이 되어 왔으며, 특히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의 경우 협상 구조의 한계로 인해 권리 보장이 충분하
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
압류가 제한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원청 기업과 하청 · 비정규직 노동

자 간의 교섭 구조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이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 Legal Updat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 내용 참조].

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	2025-08-24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게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 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고용부)

□ 과제목표

- 일터 기본권 보장, 임금채불 50%(1조 미만) 감축, 중정임금으로 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일터 기본법 제정 및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
 - * ILO 수준 감독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등
-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원위원회법 제정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
- (임금채불 근절)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채불 범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도산시 3년까지 채불임금 지급)
 - *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파로사 방지, (배달)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안전운임제 제도입
 - 대리운전·택시·건설 등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대리운전) 법제정·고율수수료 개선, (택시) 적정임금 보장, (건설) 적정임금제 제도화, 적정공사비·공사기간 보장, 기능등급제 활성화, 임금지불제 민간공사 적용 의무화 등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참고 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5. 7.

박홍배 의원안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확대 등

박정 의원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노동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국회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노동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지금,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피니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장관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논의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1. 5. 17.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 9. 6.

2022년 6월 21일 시작한 영국 철도해운수노조(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의 전국적 파업이 현재 두 달이 넘도록 진행중이다.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급여인상 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시작된 이번 파업은 13개 철도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약 89%인 4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철도운행도 평소의 20%로 축소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항만 노동자변호사·교사·간호사·소방관·공항 근로자 및 우편 노동자들도 역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이례적으로 파업의 권리를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금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 22일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 상한과 관련된 규정이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영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영국의 관련 법률은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주가치 제고

개요

지금까지 국내 기업은 대주주 중심의 경영 관행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액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기업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신

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1호](#)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025-3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제2025-6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II](#) 참조).

2025년 8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2차 개정 상법\(2025. 8. 25. 국회 통과\) 소개 및 분석](#) 내용 참조].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 364조 등).	2025-08-25 (수정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금융위)]

□ 과제목표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주요내용

-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사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스튜어디스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 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 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참고 자료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국회의원 정책자료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세미나\]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한국금융법학회 2025 특별세미나

[\[뉴욕사무소\] 한국의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해외시각](#)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 2025. 7. 9.

▶ 7.3일 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배당세제 개편 등 후속 조치도 논의 중.

▶ 시장은 대체로 이번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기업들의 실질적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고 평가.

[집중투표제 관련 현황 및 쟁점](#)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8권 3호 2018. 5. 16.

▶ 정부가 올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집중투표 방식을 정관에서 배제하여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집중투표가 실시된 사례 또한 드물.

▶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의 대상과 청구권리, 요령만을 간략하게 정하고 있는데, 집중투표 적용의 조건, 주주제

안의 자격 및 추천 후보수의 제한, 감사위원 선임 시 집중투표 적용의 문제 등 의무화에 앞서 논의될 사항들이 다
수 있음.

[주주행동주의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영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17 2025. 4. 30.

최근 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펀드의 활동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오랜 기간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상법 개정 및 스튜어드십코드제도 도입 등의 시장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22년 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자본에 의한 주주행동주의펀드 활동이 시작되었다. 주주행동주의 대상기업의 수는 2022 년과 2023년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향후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제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건은 임원선임으로 나타나는데, 정관변경과 배당에 대한 제안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관찰되 었다. 다만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에 의한 주주제안이 실제로 정기주총에서 통과되는 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했 다. 이러한 낮은 통과율로 인해 주주행동주의 활동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주행동주의펀드들은 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활동은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양한 주주제안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주제안은 정기 주총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거나 또는 상정된 이후 부결되었다. 대상기업의 주가흐름에 있어서도 주주행동 주의 활동 초기에는 시장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성과가 유지 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이용한 성과분석에서도 단기적으로 초과수익률이 관찰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에 걸쳐 성과가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주주행동주의의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서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역 할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이 주주제안 및 주주서한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관한 주주환원 정책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행동주의펀드들이 기관투자자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 보하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